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3. 31.

하동군의회의장 강 대 선

1. 조례명: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하동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사업과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인용되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모범업소와 우수업소

나. 지원사업 확대(안 제4조)

- 장비구입 지원 사업과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다. 인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 좋음 ” 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 녹색등급 ” 인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업소”를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범업소, 우수업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제4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식품위생 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업소현황	업소명		사업자등록 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내·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식품위생업소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기타()						
		공중위생업소	☐ 이·미용업소 ☐ 숙박업소 ☐ 목욕장업소 ☐ 기타()						
	지원사업	☐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 ☐ 기타()							
	사업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은”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	-----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신 설>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서	1. · 2. (현행과 같음) 3. 모범업소, 우수업소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 ----- ----- -----.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 4. (생략)

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해야 ----.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④ -----

---- 결정해야 -----.

제5조(지원의 제한) -----

-----.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2. ~ 4. (현행과 같음)

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u>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u> <u>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u> <u>한다.</u>	<u><삭 제></u>
--	--------------------